

부모부담 ZERO! 부산형 무상보육 실현을 위한

# 「2026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」 추진 계획

2026. 2.



부산광역시  
(출산보육과)

# 「2026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」 추진 계획

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부산형 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「2026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」 추진 계획임.

## I 추진근거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34조(무상보육), 제36조(비용의 보조 등)
- 「부산광역시 보육 조례」 제22조(비용의 보조)
- 온 부산이 온종일 「당신처럼 애지중지」 추진 계획('24.2.19.)

## II 추진목적

- 부모의 경제적 양육부담 경감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 기여
- 어린이집 필요경비(4종) 지원을 통한 부산형 무상보육 실현
-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보육·교육서비스 격차 해소

## III 추진경과

- '24. 7. (3~5세) 현장학습비, 특별활동비 지원
- '25. 1. (2세) 현장학습비<sup>(추가)</sup> (3~5세) 현장학습비, 특별활동비 지원
- '25. 7. (2세) 현장학습비 (3~5세) 현장학습비, 특별활동비 (5세) 부모부담 행사비<sup>(추가)</sup> 지원  
※ 교육부 무상보육 지원사업(5세, 월7만원) 시행
- '26. 1. (2세) 현장 학습비 (3~5세) 현장학습비, 특별활동비, 부모부담 행사비<sup>(확대)</sup> 지원
- '26. 3. (2세) 현장 학습비  
(3~5세) 현장학습비, 특별활동비, 부모부담 행사비, 시도 특성화 비용<sup>(추가)</sup> 지원  
※ 교육부 무상보육 지원사업(4~5세, 월7만원) 시행

➡ 부산시 어린이집 3~5세 전면 무상보육 시행

## IV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6년 3월 ~ 2027년 2월

※ [2026년 1 ~ 2월] '25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('25.3. ~ '26.2.) 및 '25년 사업계획 적용  
- (2~5세) 현장학습비 분기 5만원, (3~5세) 특별활동비 월 8만원, 부모부담 행사비 월 1만원

○ 지원대상 : 부산시 소재 어린이집 이용 2~5세 영유아 26,000여명  
※ 보육연령 기준 적용, 5세 이상 취학유예 아동 및 외국국적 재원 영유아 포함

○ 지원내용 :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범위 내 실 소요경비  
- (2세) 현장학습비, (3~5세) 현장학습비, 특별활동비, 부모부담 행사비, 특성화 비용

○ 소요예산 : 22,133,784천 원(시비) ※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5,701,080천원 포함

## V 세부 사업내용

### 가. 추진절차

| 부산광역시  | 어린이집                      | 어린이집              | 구군                        | 어린이집/구군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보조금 교부 | 필요경비 지원 사업<br>안내 및 동의서 징구 | 보조금 지급신청<br>(시스템) | 신청내역 확인 및<br>지급 승인 보조금 지원 | 정산 및 결과보고        |
| 市→구.군  | 어린이집↔학부모                  | 어린이집→구군           | 구군→어린이집                   | 어린이집→구군,<br>구군→市 |
| (분기별)  | (연 1회)<br>*신청기 또는 신규 입소시  | (매월)              | (매월)                      | (분기)             |

### 나. 보조금 신청 및 지급

○ 지원내용 :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범위 내 실 소요경비

| 구 분(보육연령) |                   | 지원항목               | 지원금액 (월 기준)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합 계         | 국비<br>(교육부, 무상보육비) | 시 비      |
| 2세        | ('23.1.1.~12.31.) | 현장학습비              | 16,660원     | -                  | 16,660원  |
| 3세        | ('22.1.1.~12.31.) | 현장학습비              | 136,660원    | -                  | 136,660원 |
| 4세        | ('21.1.1.~12.31.) | 특별활동비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70,000원            | 66,660원  |
| 5세 이상     | ('20.1.1.~12.31.) | 부모부담 행사비<br>특성화 비용 |             | 70,000원            |          |

※ 국비(교육부, 무상보육비) 대상(4~5세)은 상위연령 유아('19.1.1.~12.31.)가 취학을 유예하거나, 하위연령 유아('22.1.1.~12.31.)가 상위반 편성된 경우 국비지원 가능하며,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.

※ 국비(교육부, 무상보육비)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18년생 및 그 이전 출생의 취학유예 아동, 외국국적 영유아는 시비 지원 가능.

## ○ 산정 방식

- 전월 이용현황 확정된 출석 정보와 신청조건을 기준으로 대상자 및 지원금 산정

| 구 분   | 출석 일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원 비율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계속 재원 | 11일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% |
|       | 6 ~ 10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 %  |
|       | 1 ~ 5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5 %  |
|       | 0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미지원   |
| 입·퇴소  | 일할계산 (지원금액 x 출석 일수*/보육가능일수), 원단위 절삭<br>* 입소일로부터 입소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지원, 퇴소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지원 |       |

※ 출석인정 특례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 「보육사업안내」 준용

## ○ 신청·지급 방법: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및 익월지급 원칙

- (어린이집) 영유아 전월 이용현황에 따라 보조금 지급신청

| 구 분                 | 신청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국 비<br>(교육부, 무상보육비) | [보육통합정보시스템] - [보조금] - [무상보육비] 탭        |
| 시 비                 | [보육통합정보시스템] - [보조금] - [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] 탭 |

- (구군) 어린이집 신청 내역 확인 및 지급 승인, 보조금 지급

※ 4~5세 국비(교육부, 무상보육비)의 경우, '26.7월부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예탁방식으로 변경 예정 (별도 공지)

## 다. 정산 및 결과 보고

- 정산보고 기한 ※ 어린이집 정산보고 기한은 구군별 별도 안내  
(분기)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 (구군→시) : '26.4월, 7월, 10월, '27년 1월  
(최종) 회계연도 종료 후 ' 27. 2월말까지
- 제출서류: 보조금 정산보고서(붙임2)

## 라. 유의사항

- (어린이집)
  - 각종 필요경비 수납액은 운영위원회 심의 보고 및 부모 고지, 보조금 지원 신청에 대한 부모 안내 및 동의서 징구(붙임1) 필수
  - ※ 출석일수 미달에 따른 필요경비 학부모 부담 발생분에 대한 사전안내 철저

- 필요경비 보조금(국시비)은 관리운영비로 활용 불가
  - ※ 보육사업안내 및 교육부 사업 지침 준용
  - ※ 4~5세에 한하여 어린이집 필요경비 총수납액이 월 7만원(국비) 이내이고, 7만원 이내 집행 시 그 잔액(7만원-집행액)에 대해서는 유아 직접교육경비 활용 가능
- 세입·세출 편성 처리방식(보조금): 기존 방식 유지 ※ 적요란에 항목별 작성 및 관리 (세입) 그 밖의 지원금(03-32-324)
  - (세출) [특별활동비]수용비 및 수수료(200-210-211), [특성화비]교재·교구 구입비 (300-310-312), [현장학습비, 부모부담행사비] 행사비(300-310-313)
- 반기별 보호자별 수납액, 실 사용금액,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보고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
-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숙지하여, 당초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

## ○ (구군)

- 사업 내용 및 절차 등 숙지, 「영유아특별회계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 철저
- 상시 지도점검 체계 구축을 통한 집행 상황 관리
  - (정기 지도점검 병행 및 민원발생 시 수시 점검 실시)
  - ※ 집행점검 결과 지원 항목 외 사용 또는 기타 부정하게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시정·변경 명령 또는 반환 조치 등 실시

## VI 행정사항

### [시]

- 사업계획 배포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업 등록 : '26. 2월한
- 보조금 교부 : 매분기별

### [구·군]

- 보조금 지원 적합여부 확인: 수시
- 분기별 집행현황 보고 및 최종 정산 제출('27.2월말)(붙임2)

붙임 1. 필요경비 지원사업 안내문 및 동의서(서식) 1부.

2. 필요경비 정산보고서 및 예산 집행보고서 서식 1부. 끝.